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

Entry / Departure Declaration of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앞쪽)(front)

☐ 입국 Entry	☐ 출국 Departure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 남 Male Gender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가축사육시설 주소(축산농가, 축산농가 고용자에 한함)
Farm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1)	2)	3)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departure	
입국 일자 Date of entry	입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동안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